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후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57

발의연월일: 2024. 8. 13.

발 의 자:윤후덕·김준형·정준호

정성호 · 김정호 · 홍기원

김병주 · 임오경 · 김주영

박수현 · 김태선 · 김영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등을 교육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「아동복지법」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,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·상담을 하는 교육공무원의 업무 특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할필요가 있음.

이에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아동·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4제5호

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4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제10조의5제2호 중 "제10조의4제3호"를 "제10조의4제3호 또는 제5호" 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0조의4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임용(신규채용 및 특별채용은 제외한다) 및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4(결격사유) 다음 각 호	제10조의4(결격사유)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
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	
없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를 위
	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
	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
	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
	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
	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
	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
	을 포함한다)
제10조의5(벌금형의 분리 선고)	제10조의5(벌금형의 분리 선고) -
「형법」 제38조에도 불구하고	
교육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다	
른 죄의 경합범(競合犯)에 대한	
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	
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	
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10조의4제3호에 규정된 죄	2. 제10조의4제3호 또는 제5호-